

## 국내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의 법의학 교육과정 비교와 교육적 요구 분석

이근태<sup>1</sup>

<sup>1</sup>대전대학교 임상병리학과

## A Comparative Analysis of Forensic Medicine Curricula and Educational Needs in Medical, Dental, and Korean Medicine Colleges in Korea

Geuntae Lee<sup>1</sup>

<sup>1</sup>Department of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College of Health and Medical Science, Daejeon University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us and curricular disparities of forensic medicine education across Korean medical, dental, and Korean medicine colleges. Forensic medicine is a critical discipline that integrates medical knowledge with legal responsibilities, encompassing death certification, injury evaluation, and medico-legal documentation. Despite its growing significance in healthcare practice, it remains inconsistently implemented across educational tracks. A nationwide survey of 63 accredited institutions, including 40 medical colleges, 11 dental colleges, and 12 Korean medicine colleges, was conducted based on the most recently available curricular data. Official undergraduate curriculum documents were reviewed to identify the presence of forensic medicine related courses. Statistical analysis using Fisher's exact test was performed to assess differences among disciplines. The results revealed that 65.1% of institutions (41 out of 63) offered at least one forensic medicine course. Specifically, 67.5% of medical colleges, 81.8% of dental colleges, and 41.7% of Korean medicine colleges had such courses. All medical colleges with offerings classified them as required, while most dental and Korean medicine colleges offered them as electives. Additionally, most courses were positioned in upper clinical years.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s were found between academic discipline and course offering ( $p=0.002$ ), indicating structural inequities in access to medico-legal educ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forensic medicine should be formally institutionalized as a core competency across all healthcare disciplines. To promote curricular equity and medico-legal literacy, national accreditation standards must include forensic medicine as a required element in curriculum evaluations.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to support educational reform, reinforcing the role of forensic medicine in fostering legal competence, ethical judgment, and professional accountability in future healthcare professionals.

저자(들)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저자(들)는 이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Received:** August 10, 2025; **Revised:** September 8, 2025;

**Accepted:** September 17, 2025

**Correspondence to:** 이근태 (대전대학교 임상병리학과)

**E-mail:** gtleee@dju.kr

**Keywords** : Curriculum analysis, Curricular imbalance, Forensic medicine, Health professional colleges, Medical education in Korea

## 서 론

법의학은 의학 지식을 법률 문제 해결에 응용하는 학문으로, 사망 원인 규명, 손상 평가, 의료 분쟁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와 법률의 교차점을 담당한다. 최근 고령화 사회 진입,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증가, 의료현장의 윤리적·법적 쟁점 확대 등 변화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의료인의 법의학적 소양은 임상 실무의 필수 역량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선택 교양의 수준을 넘어, 보건의료 전문 교육과정 내에서 제도화된 핵심 교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법의학은 해부학 및 생물인류학의 응용 학문으로서, 인체 손상 해석, 사인 규명, 법적 증거 분석 등을 통해 생물학적 지식을 실제 사회 문제 해결에 연결시킨다. 따라서 해부학 및 체질인류학 기반 교육 없이 법의학의 실천적 소양을 함양하기 어렵다.

국내 의학계열은 대부분 6년제 학제 내에서 기초의학과 임상 의학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법의학은 필수과목으로 포함되지 않거나 제한된 이론 강의에 머무르는 경향이 크다. 이는 의학교육이 환자 진료 중심의 임상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법의학과 같은 융합 영역의 교육적 우선순위가 낮게 설정된 구조적 한계에 기인한다. 치과대학 역시 치의학 적 손상 감정, 법치의학 감식 등의 교육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교과는 일부 교수 또는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될 뿐, 전공필수 과목으로의 제도화는 제한적이다. 한의과대학의 경우, 의학 인문학이나 사회의학 교과는 일부 도입되어 있으나, 법의학은 전통의학 중심의 교육체계 속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다[1].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0조 등의 관련 지침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법적 책임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기능은 사망 원인의 판별, 진단서 작성의 적정성, 법적 책임의 판단 등에 있어 고도의 법의학적 판단을 요구하는 영역이다[2]. 그러나 상당수 의학계열 대학에서는 해당 교육이 전공필수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 법적 책임과 교육적 기반 간의 불균형이 제도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는 의료인의 법적 판단 역량 강화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료사고 방지, 공공통계의 정확성 확보 등 공공성과 직결되는 교육 과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과 일본 등은 의과대학 학부과정에서 법 의학을 필수 교과로 체계화하고 있으며,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는 교육 방식으로 정착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교육과정의 개설률, 시수, 평가 방식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의료인의 법적 대응 역량 부족과 법의학 전문 인력 양성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3,4].

본 연구는 국내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대상으로 법의학 관련 교과목의 개설 여부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학제 간 교육적 편차를 실증적으로 진단하고, 보건의료 고등교육 내 법의학 교육의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재료 및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25년 기준 대한민국 내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식으로 인가되어 운영 중인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 총 63개 대학이다. 구체적으로는 의과대학 40개교, 치과대학 11개교, 한의과대학 12개교를 포함한다. 이는 교육부 공시자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KAMC),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 의사협회 및 각 대학의 공식 학사정보를 기반으로 확인된 수치이다.

### 2.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025년 6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의 기간 동안 수행되었으며, 각 대학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교육과정표, 교과목 편람, 수업계획서, 학사요람 등을 열람·다운로드하여 조사하였다. 모든 자료는 공식적인 출처에서 확보하였으며, 비공개 내부 문서나 비공식 커뮤니티 자료는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분석에 포함된 교과목은 과목명 또는 강의개요상에 법의학 또는 유사 법과학 분야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로, 주요 키워드는 ‘법의학’, ‘Forensic Medicine’, ‘법치의학’, ‘Forensic Odontology’, ‘법한의학’ 등으로 정하고 해당 과목이 단순한 윤리교육이나 일반 사회과학 과목에 그치는 경우, 법과학적 분석 및 감정의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 3. 분석 방법

분석의 초점은 각 학제(의학, 치의학, 한의학)의 정규 학부 교육과정(예과 및 본과) 내에 포함된 전공필수 또는 선택 교과목으로 한정하였으며, 대학원 과정, 비교과 프로그램, 특강, 또는 연구세미나 형태의 비정규 교육은 제외하였다. 이러한 설정은 실제로 보건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공식 교육체계의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법의학 교육의 제도적 반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수집된 교과목 정보는 과목명, 개설 연도, 개설 학년·학기, 학점, 시수, 필수 여부 등을 포함하며, 그중 법의학 관련성 여부는 교과목 명칭 및 강의 개요를 기준으로 연구자가 사전 정의한 분류 기준에 따라 판단하였다. 개설 시기는 학년 및 학기에 따라 구분하고, 교과목 성격은 필수/선택 여부에 따라 분류하였다.

통계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분석은 세 단계로 구성되었다. 첫째, 기술 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통해 전체 및 학제별 법의학 교과목 개설 대학의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함으로써, 법의학 교육의 도입 정도와 학제 간 경향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였다. 둘째, 학제 간 법의학 교과목 개설 비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정하기 위해 범주형 변수 간 독립성 검정(independence test)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간 비교를 위해 범주형 분할표를 구성하였으며, 일부 학제(예: 한의과대학)의 경우 개설 빈도가 매우 낮거나 0인 셀이 존재하여, 일반적인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의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보다 정확한 해석이 가능한 Fisher의 정확 검정(Fisher's Exact Test)을 적용하였고, 유의수준은  $\alpha=0.05$ 로 설정하였다. 셋째, 분석 결과는 표 형식으로 요약 제시하였다. 그래프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각 표에는 학제별 교과목 개설 수와 백분율, 필수/선택 여부, 개설 시기 등 주요 변수와 통계 검정 결과(p-value)를 함께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제 간 법의학 교육의 상대적 편중 현상과 구조적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향후 교육정책 수립 및 커리큘럼 개선 시 실증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결 과

### 1. 전체 개설 현황 및 학제별 분포

국내 63개 의학계열 학부과정(의과대학 40개교, 치과대학 11개교, 한의과대학 12개교)을 대상으로 2025년 기준 법의학 관련 전공 교과목 개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약

65.1%에 해당하는 41개 대학에서 법의학 관련 전공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2개 대학(34.9%)은 정규 학부 교육과정 내에서 법의학 관련 교과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학제 유형별로 개설 현황을 비교한 결과, 의과대학은 전체 40개교 중 27개교(67.5%)에서, 치과대학은 11개교 중 9개교(81.8%)에서, 한의과대학은 12개교 중 5개교(41.7%)에서 법의학 관련 전공과목을 운영하고 있었다.

### 2. 통계적 유의성 분석

법의학 과목 개설 여부와 학제 유형 간의 연관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Fisher의 정확 검정(Fisher's Exact Test)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인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 $\chi^2$  test)은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셀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검정을 위해 비모수적 방법인 Fisher 검정을 채택하였다. 분석 결과, 학제 유형(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과 법의학 과목 개설 여부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확인되었으며, 유의확률(p-value)은 0.002로 산출되었다(유의수준  $\alpha=0.05$ ).

### 3. 교육과정 내 개설 시기 및 과목 성격

법의학 교과목을 개설한 41개 대학을 대상으로, 해당 과목의 편성 학년 및 교과 성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편성 시기를 보면, 전체 중 6개 대학(14.6%)은 2학년에, 19개 대학(46.3%)은 3학년에, 12개 대학(29.3%)은 4학년에 법의학 과목을 개설하고 있었으며, 학년 구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2개 대학(4.9%)이었다. 모든 과목은 본과에 편성되어 있었으며, 예과에서의 개설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교과 성격을 분석한 결과, 의과대학 27개교는 모두(100%) 전공필수로 법의학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치과대학의 경우 9개 대학 중 7개교(77.8%)가 전공필수, 2개교(22.2%)가 전공선택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5개 대학 중 3개교(60.0%)가 전공필수, 2개교(40.0%)가 전공선택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 고 찰

법의학은 단순한 법률 응용 학문이 아니라, 인체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 판단 능력을 요구하며, 이는 해부학, 병리학, 체질인류학 등 기초의학적 소양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이러한 학문 간 연계성을 고려할 때, 법의학 교육의 체계화는 해부생물인류학 교육의 외연 확대와도 긴밀히 연결된다.

본 연구는 국내 의료계열 학부 교육과정에서 법의학 교과목의 개설 현황을 학제별로 비교하여 교육적 불균형과 그 함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법의학 교과목은 주로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에서는 개설 비율이 현저히 낮거나 전무하였다. 이는 법의학이 보건의료 전문 교육의 공통 기반으로 확립되지 못하고 특정 학제에 제한적으로 도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의료법, 사망진단서 작성, 법적 감정 및 의료 분쟁 대응 등 실제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법의학적 소양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제에서는 여전히 전공필수 교육과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는 법의학 교육의 체계적 접근과 교육정책적 보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학제별 개설 비율은 법의학 교육이 다양한 학제에서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과목의 성격(필수/선택)과 개설 시기에는 여전히 편차가 존재한다(Table 1). 통계적으로도 학제와 개설 여부 간의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어, 법의학 교과목의 편성이 단순한 대학별 자율적 선택이 아니라 학제 구조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의과대학의 경우 다수의 대학에서 법학을 필수 전공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에서는 선택 과목 또는 제한적 형태로

**Table 1.** Number and proportion of universities offering forensic medicine courses by discipline in Korea (N = 63)

Discipline	Total universities (n)	With course n (%)	Without course n (%)
Medicine	40	27 (67.5%)	13 (32.5%)
Dentistry	11	9 (81.8%)	2 (18.2%)
Korean Medicine	12	5 (41.7%)	7 (58.3%)
Total	63	41 (65.1%)	22 (34.9%)

Not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 was observed between academic discipline and the offering of forensic medicine courses (Fisher's exact test,  $p=0.002$ ).

**Table 2.** Curriculum year (clinical phase) and course type of forensic medicine courses in medical, dental, and Korean Medicine colleges in Korea (N = 41)

Discipline	Colleges (n, %)	2nd year of clinical phase (n, %)	3rd year of clinical phase (n, %)	4th year of clinical phase (n, %)	Unspecified year (n, %)	Required (n, %)	Elective (n, %)
Medicine	27 (100.0%)	6 (22.2%)	14 (51.9%)	7 (25.9%)	0 (0.0%)	27 (100.0%)	0 (0.0%)
Dentistry	9 (100.0%)	1 (11.1%)	2 (22.2%)	4 (44.4%)	2 (22.2%)	7 (77.8%)	2 (22.2%)
Korean Medicine	5 (100.0%)	1 (20.0%)	3 (60.0%)	1 (20.0%)	0 (0.0%)	3 (60.0%)	2 (40.0%)

Note. All curriculum years in this table refer to the clinical phase of undergraduate education, excluding the pre-medical period. In two dental colleges, the year level was not specified; although there were no formal restrictions on enrollment by year, the course content indicates that the subject was intended primarily for clinical-phase students.

만 도입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법의학 교육의 형평성과 학제 간 접근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을 뒷받침한다. 또한 다수의 대학이 법학을 기초 교양 수준이 아니라, 임상 단계 이후 윤리적·법적 판단이 필요한 전문 지식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과정 편성 현황은 일부 학제에서는 필수 과목으로 제도화된 반면, 다른 학제에서는 여전히 부차적 위치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Table 2). 따라서 법의학은 보건의료 전문직 교육에서 핵심 역량으로 충분히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전공 간 형평성 저하와 조기 법의학 소양 형성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향후 일관된 교육정책을 통해 법학을 조기 필수 교육과정으로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법의학은 질병이나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사망진단, 법적 감정, 의료 분쟁 대응, 감염병의 법적 신고체계, 공공보건 위기상황에서의 판단 등 다양한 맥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사망 원인 감별 및 법적 책임 소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대의 의료 환경에서는, 모든 보건의료인의 법의학적 기본 소양이 필수적인 전공역량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법의학의 중요성이 아직까지 보편적 교육과정으로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반면,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응급구조학과, 방사선학과와 같은 보건의료계열 학과에서는 법의학과의 융합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법의학 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습 부족이 교육과 실무 현장의 사각지대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국내 간호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 전문직에서 법의학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는 이러한 교육 격차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5-10]. 이는 법의학 교육이 특정 학과나 계열에 국한되지 않고 보건의료 전문직 전반의 필수 역량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법의학 과목이 개설된 경우에도 대부분 고학년 임상

과정 후반에 선택과목 형태로 편성되고 있어, 법의학을 의학 교육의 보편적 핵심역량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는 학생들의 접근성 저하뿐 아니라, 임상 전 단계에서의 법적 감수성 함양 기회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법의학적 판단은 단순 지식의 습득이 아닌, 윤리적 사고, 법률 해석, 사회적 책임의식 등을 아우르는 고차원적 인지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른 시점에서의 교육 개입이 바람직하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 기반의 실습 자료 개발이 이러한 교육 개입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안되고 있으며, 법치의학 분야에서 그 실효성이 입증되었다[11].

본 연구의 강점은 국내 모든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 학부 교육과정의 법의학 과목 개설 여부를 전수 조사하였다는 점에 있다. 이는 특정 지역이나 학교에 국한되지 않은 전국 단위의 객관적 실태를 반영함으로써, 학제 간 교육 격차의 실존 여부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 특히 희소한 개설 현황을 고려하여 Fisher의 정확 검정(Fisher's Exact Test)을 활용한 통계 분석은, 자료의 분포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정규 교과과목 개설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개별 교수의 특강, 선택 세미나, 블록식 교육 등 비정규 형태의 법의학 교육은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또한, 개설 과목의 강의 내용, 수업 시수, 교수자의 전공과 전문성 등 질적 요소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학습성과 평가, 학생 인식 조사, 교수자의 교육경험 분석 등을 포함한 질적 접근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법의학 교육이 특정 학제에 편중되어 있으며, 보건의료 전문직 양성을 위한 공통 핵심 역량으로서의 정당한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단지 교육의 다양성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행위에 내재된 법적·윤리적 판단의 일상화를 고려할 때, 학제 간 형평성 확보와 법의학 교육의 제도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의 학부 교육과정에서 법의학 전공 교과목의 개설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학제 간 교육 불균형의 구조적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전체 63개 대학 중 41개교(65.1%)에서 법의학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의과대학 27

개교(65.9%), 치과대학 9개교(22.0%), 한의과대학 5개교(12.2%)로 구성되어 있었다. 의과대학에서는 모든 개설학교가 전공필수 형태였던 반면,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은 전공선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개설 시기도 주로 고학년 임상 단계에 편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법의학 교육이 특정 학제에 편중되어 있으며, 보건의료 전문직 전반에 요구되는 법적 소양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교육이 제도적으로 미흡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다수의 대학에서는 법의학을 선택과목으로 한정하거나, 고학년 임상 교육의 말미에만 배치하고 있어 조기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이는 법적 감수성과 윤리적 의사결정 역량 함양에 있어 구조적 한계를 야기하며, 향후 보건의료인의 법적 대응력과 공공보건의 역량을 저해할 수 있다.

법의학은 단순한 사인 규명을 넘어서, 의료인의 법적 판단 능력, 환자 권리 보호, 의료 분쟁 대응, 사법 협력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아동학대나 폭력 피해자 진료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 현장에서는 진단과 판단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12]. 따라서 보건의료 고등교육 전반에서 법의학을 기초 필수 교육으로 정립하고,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관련 학회 차원의 국가 수준 교육 표준 마련과 제도적 반영이 시급하다. 특히 한국의학교육평가원(KIMEE),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KDEEC),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KACME) 등 학제별 인증기관이 법의학을 필수 전공역량으로 간주하고, 정규 교육과정 인증 평가 기준에 법의학 교과목의 개설 여부와 교육 내용의 적절성을 포함하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제 간 형평성 확보뿐만 아니라, 법의학의 교육적 위상을 제고하는 실질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향후 법의학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 교수 인력의 확보, 온라인 기반 교육 콘텐츠 개발, 교육자료의 공동 활용 등의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치의학 및 한의학 교육에서도 실질적인 법의학 교육이 가능하도록 다학제적 통합 교육 모델의 확대가 요구된다. 나아가, 법의학 교육이 임상 실무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지식 체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강의 중심의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사례 기반 실습 및 역량 기반 평가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법의학은 보건의료 전문인의 법적·윤리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기반이다. 이를 학제 간 연계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교육 구조 속에서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국가적 수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각 대학의 교육과정 재구성이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 법의학 교육의 실태를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실증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교육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 REFERENCES

1. Park SY, Bang G, Choi SH, Chae SJ. Analysis of the curriculum of medical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 in Colleges of Korean Medicine based on KAS2021. *J Korean Med.* 2021; 42:82-9.
2. Republic of Korea. Enforcement Rule of the Medical Service Ac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o. 1002, Article 9 and 10, revised 2023 Mar 15 [Internet].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3 [cited 2025 Aug 6].
3. Huh GY, Lee YM, Kim JK. Undergraduate education in forensic medicine in Germany, Japan, and Korea: comparison of national curricula. *Korean J Leg Med.* 2022;46:123-31.
4. Huh GY. Education and training of clinical forensic examination in the management of child abuse in Korea: comparison with Germany, the United Kingdom, Australi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Korean J Leg Med.* 2023;47:87-94.
5. Jeong K, Seo J, Han M, Jung D. Korean radiographers' awareness, experiences, and education needs in forensic medicine and forensic radiology. *Heliyon.* 2024;10:e32219.
6. Jung SH. A study on educational requirement of forensic medicine for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Korean J Clin Lab Sci.* 2015;47:153-8.
7. Hong HS, Kim DJ, Kim HJ, Seong HJ, Yoon WJ, Na YK.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the forensic nurse's role and needs of forensic nursing education. *J Korean Biol Nurs Sci.* 2013;15:115-21.
8. Yoo YS, Cha KS, Cho OH, Lee SK. Emergency department nurses' recognition of and educational needs for forensics nursing education. *Korean J Adult Nurs.* 2012;24:499-508.
9. Kim BY, Lee SH. The educational need of forensic medicine for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in 119 rescue service. *Korean J Investig Sci.* 2007;2:50-66.
10. Lee HY, Moon JD. Assessing the forensic knowledge of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Korean J Emerg Med Ser.* 2019;23:75-86.
11. Knivsberg IC, Kopperud SE, Bjørk MB, Torgersen G, Skramstad K, Kvaal SI. Digitalised exercise material in forensic odontology. *Int J Legal Med.* 2022;136:381-90.
12. Saukko P, Knight B. *Knight's Forensic Pathology.* 4th ed. CRC Press; 2015.

**간추림** : 본 연구는 국내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의 학부 교육과정에서 법의학 교과목의 개설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학제 간 교육 불균형의 구조적 실태를 진단하였다. 최근 기준, 총 63개 대학(의과대학 40개, 치과대학 11개, 한의과대학 12개)을 전수 조사하였으며, 공식 교육과정 문서를 바탕으로 법의학 관련 정규 전공과목의 개설 여부, 과목 성격, 교육 시기를 분석하였다. 전체의 65.1%인 41개 대학에서 법의학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었으며, 학제별 개설 비율은 의과대학 67.5%, 치과대학 81.8%, 한의과대학 41.7%로 나타났다. 의과대학은 모두 전공필수로 운영된 반면,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은 전공선택 과목으로 편성된 비율이 높았고, 대부분 고학년 임상 단계에 개설되어 있었다. Fisher의 정확 검정 결과, 학제 간 개설 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02$ ). 이러한 결과는 법의학 교육이 학제별로 제도화 수준이 상이하며, 조기 교육 기회가 제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법의학은 모든 보건의료 전문직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으로 제도화되어야 하며, 교육부와 학제별 인증기관은 법의학 교과목의 개설 여부 및 교육 내용의 적절성을 정규 평가 기준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법의학 교육의 형평성과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적 개선의 근거를 제공한다.

**찾아보기 낱말** : 교육과정 분석, 교육과정 불균형, 법의학, 의학계열, 한국 의학교육